

「창업보육센터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4. 9. 1. 제정 판 (시행 2014. 9. 1.) → 2016. 2. 29. 개정 판 (시행 2016. 3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07/compare?from=516&to=51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전 8:03:0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12인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, 서기는 센터장으로 한다.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입주자 선정, 졸업 및 퇴거 등에 관한 사항 3.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4. 시행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3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산학협력단장(위원장), 창업보육센터장(서기)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재무실장, 창업보육센터팀장, 산학협력팀장,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</u> 구성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<u>창업보육센터 입주·퇴실</u> 관련사항 2. <u>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</u> 사항. <개정 2016-02-29> 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창업보육센터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8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단장(위원장), 창업보육센터장(서기)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재무실장, 창업보육센터팀장, 산학협력팀장, 산학협력단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.
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창업보육센터 입주·퇴실 관련사항
2.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사항.
⑤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